

2020년 후반기

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소집교육



육 군 본 부



□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(장교)

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수령하여 학업을 이수한 기간 만큼 **4년 가산하여 군 복무하는 자**

* 의무복무기간 : 7년(학사장교), 6년 4개월(학군장교)

□ 군 가산복무자 역할

- 체력단련, 군사지식 함양, 건강관리
- 관리 학군단 **지시사항 이행**(소집교육, 체력검정, 신체검사 등)
- 군 가산복무자 **규정 준수**
 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(대통령령 제28423호)
 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(국방부령 제00948호)
 -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(육군규정 107)



□ 실시사항

- 군 가산복무자 **소집교육** : 연 2회 16H 교육 참석
 - * 소집교육 무단 불참시 : 경고장 발송(1회), 품행불량자 분류처리 및 선발취소 심의(2회)
- **신체검사** : 연 1회
 - * 신체검사 합격 3급 이상, 신체검사 불합격시 선발 취소
- **체력검정** : 연 1회(~20. 12. 31한)
 - * 체력검정 3개 종목 모두 합격, 불합격자는 해당 종목에 대해 총 3회 재측정 후 최종 불합격자는 선발 취소
- **졸업 前 4가지 충족** : 학위취득, 신체검사(3급이상), 체력검정, 신원조사
- **신상변동사항**(유학, 징계·범죄, 건강, 연락처 변경 등) 발생시 반드시 보고
 - [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37조(선발 및 선발취소)]



□ 선발취소

- 현역의 병적(입영훈련 전)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 취소 가능
- 『군인사법』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음주운전, 상습도박,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
-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(학기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자)
-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긴 경우
-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
- 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

[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3조, 제14조]



[참고]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
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,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 - * 이중국적자는 임관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


□ 휴학(입영연기) 가능?

[심의 후 승인을 통해 가능]

- 군병원에서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

* 제출서류 : 군병원 진단서(소견서), 개인 사유서, 기타(민간병원 진단서 등)

- 본인의 경제활동 이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* 제출서류 : 가정의 경제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, 개인 사유서, 훈육 심의서

- 국외유학,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

* 교환학생 : 합격 증명서(해당 학교장 관인 증명서), 개인 사유서 / 서약서, 학점인증 협약서

* 유학 / 연수 : 합격 증명서(공증), 개인 사유서 및 서약서

- * 단, 휴학 또는 입영연기는 그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 할 수 있으며,

(휴학(입영연기)로 인해 임관일 기준 나이 기준에 미충족시 선발취소 됨)

[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1조]



□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?

[심의 후 결정]

- 대상자 : ①선발 취소자 ②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
- 반납기간 :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
- 반납연기 :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신청서를 학군단 (임관 후 해당부대)을 통해 인사사령부로 공문을 통해 제출
 - *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가능(반납기한 포함 1년 초과제한)

[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3조]



□ 군 가산복무 지원금 (부분)면제?

[심의 후 국방부장관 승인하 결정]

- 사유 : ① 사망한 경우
② 군 의료기관 신체검사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(공상)으로 장교로 임용제한시
③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현역 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
④ 개인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(질병) 등으로 복무할 수 없는 경우

- 신청방법 :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**반납(부분)면제신청서를 학군단**(임관후 해당부대)을 통해 **인사사령부로 공문을 통해 제출**
 - * 제출서류 : 군병원 진단서(소견서), 개인 사유서, 훈육심의서, 기타(민간병원 진단서 등)
반납 (부분)면제 신청서, 10년 의무기록사본
 - * ①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면제는 제한, 기타 사항은 심의 후 국방부 장관 승인하 결정

[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3조, 제14조]



□ 교육기관 및 전공학과(부) 변경?

[심의 후 결정]

- 교육기관 변경 : 편입 합격 후 9월 중 학군단을 통해 공문으로 건의

- * 편입 후 신청시 심의 없이 선발 취소
- * 제출서류 : 편입 합격증, 편입학교 등록금 고지서

- 전공학과(부) 변경 : 학교에 전과 신청시 학군단을 통해 공문으로 건의

- * 전공학과 변경신청시 심의 없이 선발 취소
- * 제출서류 : 전공학과(부) 합격 증명서, 변경된 전공학과 등록금 고지서

□ 기타

- 군 가산복무자 + 학군 동시자는 두 개의 신분으로 각 신분별 규정을 모두 적용



□ 2020년 군 가산복무 대상자 현황 파악 / 유지

- 재학중인 가산복무자 현황 확인, 1학기 성적 및 기타 신상 확인
- 임관 유예자 및 유학, 휴학 중인 대학생 등
- 소집교육간 DB최신화 및 확인 노력 강구(관리책임 학군단 포함)
- 연명부, 연락처(주/예비), 주소지, 기타 신상변동 사항 등

□ 2021년 임관자 현황 파악 철저

- 임관 유예자 및 20년 입영훈련 중 유예자 등 확인
- 20년 군 가산복무자 선발자 중 4학년 인원 추적 확인(11월 중 선발 예정)
- 임관 대상자 성적, 체력, 신체검사, 졸업 가능여부 등 확인 철저



자주하는 질문

□ 군 가산복무 지원금 입금, 반납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 문의?

- 학비 입금(반납) 관련사항 : 학군교 재정과 장학금담당관(043-830-6154)
- 각종 규정 : 육군본부 군장학생 선발관리장교(042-550-7144)
 - * 문의 : 평일 일과시간(09:00 ~ 17:30)

□ 각 학기별 성적 100분의 70 미만(C학점) 기준?

- 각 대학의 성적 백분율 환산 기준(70%)에 의해 적용

□ 교환학생, 유학, 전과, 편입시 보고해야 하나요?

- 학군단을 통해 공문으로 육군본부 선 보고 후 승인하 시행